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신청 대상

1. 2007. 7. 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2009. 2. 6.(법 공포일)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

1. 퇴직연금(직역연금) 또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2.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

신청 시기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퇴직일시금 수령한 경우

- 연계신청 시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기관에 연계반납금으로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연계 신청 자동취소)
-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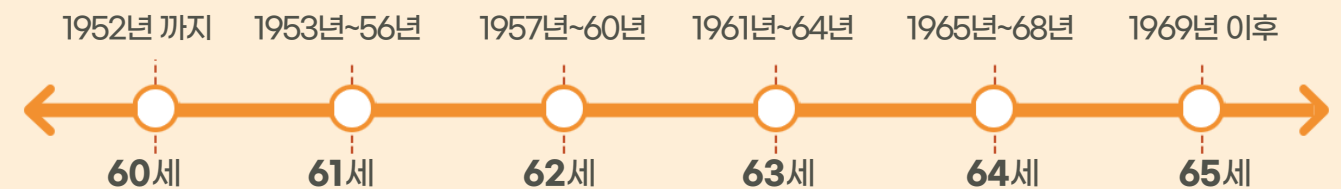
수급 요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은 각 연금법에 따라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산정되어 연금관리기관별로 지급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1.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접속
2. 상단 '신청관리' → '신청접수' 클릭
3.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기간 선택 하여 접수



서면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클릭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신청서' 작성
4. 팩스(064-802-2844) 또는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유의사항

1.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연금수급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연계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며 국민연금 부분은 연계연금으로 수령불가 합니다.
3. 과거 직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 승인 후 합산 신청 시 종전 연계가 취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되므로 합산 승인 후 연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직역연금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수당 청구(퇴직일시금 청구와 별도)가 가능합니다. 연계승인 시 퇴직수당 지급내역 확인 후 처리되오니 퇴직수당 청구*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 퇴직급여 인터넷청구(퇴직수당)



재직기간 가산 제도가 궁금해요!

‘공적연금연계제도’ 알아보기

1.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접속
2. 상단 메뉴 ‘안내’ → ‘제도소개’ 클릭
3. ‘연금연계제도’ 클릭



‘재직기간 합산’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상단 메뉴 ‘사업안내’ → ‘연금사업’ 클릭
3. 좌측 메뉴 ‘합산사병 신청방법’ 클릭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